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08년 9월 16일

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

吳 香 燮



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훈령 제 16 호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”을 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항 및 제 4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각각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일부개정

1. 제안이유

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제5조 제1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동조 제4항 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일부개정.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나. 관계법령 :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2조 및 제3조